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20659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206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나2963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미영, 이선숙, 이준서, 문병규, 백화명, 최성대,

민경택, 윤도연, 김찬성, 허반석, 이대승, 김경돈,

조용석, 김성진, 김형근, 조경철, 임재홍, 고병수

피고, 상고인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서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형, 신인순

판결선고 2021. 7. 8.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나296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